對外秘

차○○ 판사 언론사 기고 관련 겸직허가

2015. 9. 21. 윤리감사관실

1. 검토 배경

▣ 차○○ 판사(○○○○법원 ○○지원 35기)의 시사IN Live 글 기고

- 현직 판사의 일주일을 공개합니다. ➠ 5회에 걸쳐 연재 예고
- 2015. 9. 21. 기고(제1회) 중 주요 부분

> "사실심인 1·2심이 사실판단 부분에서 심히 부실하니 원래 3심은 법률심이어야 하지만 사실 판단도 검토해줘야, 1·2심의 사실심 충실화가 가능하다." 상고법원 찬성론 중에 이런 주장도 있다. 가능한 논리이나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판사들도 5분 재판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상시 야근, 주말 근무로 떡에 찬 상태로 일하는 판사가 많다. 상고법원이 법률심으로서 가진 권한을 넘어 더 충실히 사실심의 사실 판단을 깨는 월권적 행위를 해도, 사실심 판사들은 심리 강도를 높일 여유가 없다.
>
> 이미 대법원이 채증법칙 위반, 심리 미진으로 사실심 사실 판단 관여를 많이 했다. 하지만 사실심의 소극적 증거 채택의 심리 관행은 바뀌지 않고 있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내놓은 한국형 디스커버리(미국에서 당사자들이 주도해 서로 가진 증거자료를 현출시키는 제도) 등의 각종 사실심 충실화 대책도 결국 이 5분 재판의 벽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
> 아니 사실 대부분 판사도 별다른 감흥이 없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알 것이다. 스스로 원해서 내놓은 안도 아니고, 상고법원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과 변호사 단체 요구로 명목상 내놓은 사실심 충실화 방안이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리라는 것을. 5년, 10년에 걸쳐 판사 수를 대폭(1.5~3배) 증원해, 5분 재판을 20~30분 재판으로 만들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사실심 충실화가 가능하다. 물론 나를 포함해 법관들도, 법관 수 증원과 더불어 기존 재판 모델에 안주하지 않고, 질 높은 새로운 재판 모델의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상당수의 법관, 특히 고위직 법관들은 판사 수 증원이 판사의 희소성을 떨어뜨려 사회 지위를 낮출 거라고 우려해 내심 반대하기도 한다.

▣ 차 판사의 기고가 계속적 기고로서 겸직허가의 대상인지 여부 검토

▣ 차 판사 글의 법관윤리 위반 여부

2. 차○○ 판사

▣ 학력사항

- ○○. 2. ○○고등학교 졸업
- ○○. 2. ○○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 3. ○○대학교 법과대학 석사졸업

▣ 경력사항

- 사법연수원 35기
- 09. 4. ○○○○○○법원 / 11. 2 ○○○○○○법원 / 13. 2. ○○지법 ○○지원 / ○○ ○○○○○연구소 파견 / 15. 2. ○○지법 ○○지원(민사단독)

3. 겸직허가 요부 검토

가. 관련 규정

법원조직법
제49조(금지사항)
법관은 재직 중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4. 대법원장의 허가없이 보수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법관이 관여할 수 없는 직무 등에 관한 규칙
제3조(허가에 의한 관여)
① 법관이 법 제49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여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직위에 취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관은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겸직 허가 요부

▣ '보수 있는' 기고인지 여부

-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겸직허가의 대상이 아님 ➠ 보수 유무 확인 필요

▣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무'에 해당하려면 어느 정도 '계속성'을 갖추어야 함
  - 1회성 또는 간헐적 저술행위로 인한 서적의 간행은 1회적 행위이고 계속적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서적의 판매로 인한 인세의 계속적 수입이 있어도 행위의 결과가 지속

되는 것에 불과하여 “직무”로 볼 수 없음(법관윤리 책자 195면)

- 외부강의의 경우에도 1회성 외부강의는 겸직허가의 대상이 아니나, 강의기간이 2개월 이상인 계속적 강의, 동일기관 상대 월 3회 또는 월 6시간 이상의 출강이 예정되어 있는 등 직무수행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법관윤리 책자 190면)

● 차 판사의 기고가 5회 정도 계속될 예정이라면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겸직허가 대상이라고 봄이 상당(윤리감사관실 토론 결과)

- 다만 외부 기고의 경우 어느 정도 횟수의 기고이어야 계속성이 인정되어 겸직허가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법관들에게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된 바 없음(☜ 법관윤리 책자에도 기준이 소개되어 있는 외부강의와는 다름)

- 또한, 차 판사가 장문의 기고문을 미리 작성하여 언론기관에 송부하였는데, 언론기관이 지면 관계상 이를 5회에 걸쳐 나누어 게재하는 경우라면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임(☜ 기고문 작성 횟수 확인 필요)

다. 유사사례 검토

1) 겸직허가를 받은 사안

▣ [2015. 4.경] 문○○ 부장판사(26기) 한겨레 신문 연재 소설(2015년)

● 우리 이웃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분쟁의 법과 상식에 기반한 지혜로운 해결 과정(재판 및 조정) ➠ 현재 ‘미스 함무라비’ 연재 중

▣ [2014년] 문○○ 부장판사(26기)

● 조선닷컴(프리미어 조선) ➠ 종료

● 중앙일보(문○○ 판사의 일상유감) ➠ 계속

▣ [2014년] 박○○ 부장판사(25기)

● 대한변협신문 칼럼 ‘법정단상’ 월 1회 ➠ 종료

▣ [2011년] 김○○ 판사(34기)

● 소년 조선일보 어린이 법률만화 ‘명판사 고려취’에 연재 원고 기고

▣ [2013년, 2015. 1.경] 허○ 판사(37기)

● ㈜지학사 발간 「고교독서평설」에 1년 동안 ‘사회, 법정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기고

2)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사안

▣ 법률신문 「월요법창」 ➠ 3주마다 한 번

- 성○○ 부장판사(연수원 22기) : 2015. 5. ~
- 임○○ 부장판사(연수원 29기) : 2014. 11 ~ 2015. 5.

▣ 법률신문 「법대에서」 ➠ 2주마다 한번, 각 10번 정도

- 김○○ 부장판사(연수원 22기), 장○○ 판사(연수원 32기) : 2015. 9.~
- 심○○ 고법판사(연수원 27기), 정○○ 판사(연수원 32기) : 2015. 3.~ 2015. 9.
- 예○○ 부장판사(연수원 22기), 이○○ 고법판사(연수원 27기) : 2014. 9.~ 2015. 3.
- 최○○ 부장판사(연수원 28기), 장○○ 고법판사(연수원 26기) : 2014. 3. ~ 2014. 9.
- 함○○ 부장판사(연수원 25기), 장○○ 고법판사 : 2014. 1. ~ 2014. 3.
- 함○○ 부장판사, 이○○ 고법판사(연수원 26기) : 2013. 9. ~ 2014. 1. 2.
- 배○○ 부장판사(연수원 25기), 박○○ 부장판사(연수원 22기) : 2013. 2. ~ 2013. 9.

▣ 한국경제 「한경에세이」

- 윤○○ 법원장(연수원 14기) : 2015. 3. ~ 4.까지 주 1회 9회 기고

라. 조치 검토

▣ 겸직허가 신청을 하도록 요구 시 당사자의 반발 예상

- 겸직허가가 요구되는 계속적 기고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고, 그에 관한 기준이 법관들에게 사전에 안내된 바도 없음
-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법률신문 등에 계속적 기고를 한 법관들이 다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차 판사에게 겸직허가 신청을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상고법원에 관한 법원 내부의 반대의견을 탄압하는 것이라는 반발도 예상됨

▣ 차 판사가 겸직허가 신청을 하고 이를 불허하는 경우 언론, 국회 등의 비난 예상

● 차 판사가 겸직허가 신청을 하고 이를 불허하는 경우 차 판사 본인은 물론, 언론, 국회 등 외부에서 상고법원에 대한 법원 내부의 반대의견을 탄압하고 있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음 ➠ 得보다는 失이 많을 수 있음

▣ 대안

● 법원장, 지원장 등을 통해 자제를 권고하는 방법

● 겸직허가 신청을 허가하면서 법관윤리 규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는 방법 등

4. 기고 내용의 법관윤리 위반 여부

가.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 관련 법령

> **법관윤리강령**
> 제2조(품위유지)
> 법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
>
> **법관징계법**
> 제2조(징계 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7호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
> 둘째, 법관은 SNS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여 품위를 유지하고, 법관으로서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편견이나 차별을 드러내거나 그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검토 ➠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이유로 조치하는 것은 부적절함

● 기고문에 욕설이나 저속한 표현 등이 사용되지는 않았음

● 기고문 중 ① 사실심 충실화 방안이 상고법원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과 변호사 단체 요구로 명목상 내놓은 안이고, ② 고위직 법관들은 판사 수 증원이

판사의 희소성을 떨어뜨려 사회적 지위를 낮출 거라고 우려해 내심 반대 ➠ 근거 없이 사법행정권자와 고위직 법관들의 의도를 곡해하여 단정적으로 표현

- 위 1, 2는 사법행정권자, 고위직 법관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에 해당될 여지가 있고, 나아가 징계사유 중 하나인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할 여지도 있음

  - 고위직 법관들이 판사 수 증원이 판사의 희소성을 떨어뜨려 사회적 지위를 낮출 거라고 우려해 내심 반대 ➠ 객관적인 근거 없는 추측, 기득권 수호 이미지 고착
  - 상고법원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과 변호사단체의 요구로 명목상 내놓은 사실심 충실화 방안 ➠ 객관적 근거 없는 추측, 목적 달성을 위해서 효과 없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이미지 형성

- 그러나 위와 같은 기고문 내용이 명예훼손적인 것이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것에 해당하느냐에 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차 판사 글의 전체적인 취지가 '대법원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비판',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이라는 점에서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볼 여지도 많아, 위 기고문이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나. 공정성 유지의무 위반 여부

▣ 관련 법령 등

법관윤리강령

제3조(공정성 및 청렴성)

① 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7호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

둘째, 법관은 SNS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여 품위를 유지하고, 법관으로서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편견이나 차별을 드러내거나 그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다섯째, 법관은 SNS 상에서 사회적·정치적 쟁점에 대하여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에도 자기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법관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2007추127)

법관도 직무 외에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의 주체이다. 따라서 법관은 민주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공공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표명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법관의 표현의 자유도 한계가 있고, 공익을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으며,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되고, **법원의 위신이나 권위를 실추시키는 내용**의 개인적인 의견의 표명도 제한된다. 이러한 표현내용은 법원과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 종국적으로는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권의 행사에 있어서 공정성에 의심을 들게 하고 사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법관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적 관심사항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에도 법관은 법과 정의의 수호자로서 적정한 절차에 따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절제되고 균형적인 사고에 기초하여 하여야 한다. 자기절제와 균형적 사고는 판단자로서의 직업 법관에게 요구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자 덕목이며 이러한 중용지도의 덕목은 의견 표명의 방법에서도 요구된다. 왜냐하면, 법관의 역할과 사회적 영향력 및 법관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사안에 대한 법관의 의견은 비록 사견이라고 하더라도 그 파급효과가 중대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진실하고 정의로운 것으로 오도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법관에 대한 두터운 신분보장이나 직무상의 독립 등의 특권은 법관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지위에서 부여된 것이므로 이러한 지위는 법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서만 보장되고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고, 법관 개인이 자신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거나 남용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뱅갈로어 법관행동준칙 주석

법관은 다른 시민과 동일한 권리를 향유한다(A judge enjoys rights in common with other citizens)

134. 법관은 임용 시에 사회 구성원들이 누리는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전의 정치적 소신을 버리거나 정치적 쟁점에 대한 관심을 멈추지도 않는다. 그러나 공정성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유지하지 위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대중적인 논쟁에 사법부가 관여할 적정 수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는, 법관의 관여로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에 관한 공중의 신뢰가 손상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둘째는, 그러한 관여가 법관으로 하여금 불필요하게 정치적인 공세에 휘말리게 하거나 법관의 직무상 위엄과 양립하지 아니하는지 여부이다.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법관은 관여를 피하여야 할 것이다.

법관은 대중적인 논쟁에 휘말려서는 아니 된다(Judge should not be involved in public controversies).

136. 법관은 대중적인 논쟁에 부적절하게 휘말려 들어서는 아니 된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법관의 요체는 논쟁 대상을 객관적이고 사법적인 방식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다. 마찬가지로 법관은 공중에 대하여 법관의 특징인 초연하고, 치우치지 아니하며, 선입견을 배제하고, 공정하며, 열린 마음으로, 공평하게 사건에 접근하는 것으로 공중에게 비추어지는 것도 중요하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공동체에서 다른 공인과 함께 논쟁에 참여하거나 공개적으로 정부를 비판함으로써 법관이 정치판에 뛰어들고 대중적인 논쟁에 참가한다면, 그 법관은 법정에서 재판할 때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해당 법관이 공개적인 의견을 표명한 바 있는 주제와 관련된 분쟁에 관해 재판할 경우나, 더 심각하게는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던 공인이나 정부부처가 소송 당사자가 되거나 증인이 된 경우에는 그 법관은 불공정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

법관은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외부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A judge may speak out on matters that affect the judiciary)

138. 법관이 정치적으로 논쟁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절하게 외부에 의견표명을 할 수 있는 제한적인 경우가 있다. 그 논쟁이 법원 운영, 사법부 독립(법관의 보수와 혜택을 포함), 법 집행의 근본적인 측면, 또는 법관 개인의 청렴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관한 경우에도 법관은 매우 신중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법관이 이들 문제에 관하여 적절하게 의견을 표명하더라도, 정부를 상대로 '로비활동'을 하는 것으로 비추어져서는 안 되고 특정한 상황이 법원에 사건화 되었을 때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암시하는 것으로 비추어져서도 안 된다. 나아가 법관은 그의 공개적인 의견표명이 사법부의 견해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법관이 일반적인 사법부의 견해가 아닌 단지 개인적인 견해로 받아들여지는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때때로 어려울 수 있다.

법관은 법과 관련된 토론에 참가할 수 있다(A judge may participate in a discussion of the law)

139. 법관은 교육적인 목적이나 법의 약점을 지적하기 위한 법 관련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법관이 법안에 대하여 논평하는 것이 유익하고 적절한 것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위헌 여부에 관해 비공식적인 해석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견해 제시는 피하여야 한다. 보통의 경우, 법안이나 정부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견해표명은 실무적 영향이나 법안의 흠결사항과 관련되어야 하고, 정치적으로 논쟁거리가 되는 쟁점은 피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사법적 의견표명은 개인으로서가 아닌, 사법부 전체 또는 기관으로서의 노력의 결집 형태로 행하여져야 한다.

▣ 검토 ➠ 공정성 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이유로 조치하는 것은 부적절함

● 법관은 사회적·정치적 쟁점에 대하여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에도 법관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함

- 상고법원 도입 여부는 현재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으로, 이에 관한 일방적인 입장의 의견 표명(특히 차 판사가 소속된 법원과 반대되는 의견 표명)은 법관과 법원을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할 수 있음
- 이러한 점에서 차 판사의 기고문이 공정성 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님

● 그러나 다른 한편, ① 법관의 사회적 쟁점에 대한 의견표명을 모두 공정성 유지의무 위반으로 본다면 법관의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약된다는 비판이 가능한 점, ② 상고법원과 사실심충실화 방안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것으로 사법부 구성원인 법관의 의견표명이 가능한 영역인 점(위 뱅갈로어 법관행동준칙 주석도 사법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논쟁이 있는 사안일지라도, 법관이 외부에 의견표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음), ③ 법관에게 공정성 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해당 쟁점이 사건화되었을 때 재판하는 법관이나 법원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위 쟁점은 사법제도에 관한 것으로서 실제 사건화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차 판사의 기고문 내용이 공정성 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임

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

▣ 관련규정

법관윤리강령
제7조(정치적 중립)
① 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 검토

● 차 판사의 글이 정치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라. 조치 검토(종합)

▣ 법관윤리 위반 여부 ➠ 단정할 수 없음

● 차 판사의 글 내용에 부적절한 면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법관의 품위 유지의무, 공정성 유지의무,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법관윤리 위반으로 조치 가능 여부 ➠ 신중 검토 필요

● 법관윤리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또한, 차 판사에 대해 법관윤리 위반이라 하여 직접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사회적 논란거리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함이 타당

- 법관의 의견 표명과 관련된 이○○, 김○○, 이○○ 판사 사건 등이 발생하여 그들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그와 관련하여 법관의 의견 표명을 제한하는 권고의견들이 연이어 공표된 상황에서, 차 판사의 기고문까지 문제 삼아 법관윤리 위반으로 조치를 하는 것은 법관들의 집단적인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음

- 언론 등에서 상고법원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홍보 등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추진하는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취지의 글을 기고한 판사에 대해 법관윤리에 반하는 면이 있다는 이유로 어떤 조치를 한다면 언론, 나아가 국회로부터도 비난이 있을 수 있음

- 현재 시행 중인 각급 법원의 간담회 등을 통한 내부소통 행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대안

● 소속 법원장이나 지원장으로 하여금 차 판사가 언론에 글을 기고할 때 법관윤리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는 방안

● 차 판사의 지인을 통해 차 판사가 주장하는 법관의 대폭 증원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고, 상고법원과 사실심충실화 방안이 현재의 상황에서는 최선의 방안임을 설득하는 방안

➠ 다만 이러한 조치에 대해 차 판사가 법원 내부게시판 또는 언론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러한 경우 또 다른 논란거리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음